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2020년 3월 31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3월 30일(월)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0. 3. 30.(월)	담당부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TF
담당과장	이재석 팀장(044-203-5895)	담 당 자	조동후 사무관(044-203-5894)

포항지진특별법 4월 1일 시행

- 진상조사위원회·사무국도 같은 날 출범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19.12.31. 공포)이 시행령 제정 절차를 마치고 4월 1일 시행된다고 밝힘

○ 이번 시행령은 ①**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②**사무국** 구성, ③**포항주민 지원사업**(포항트라우마센터,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등)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음

□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진상조사위원회와 사무국 또한 4월 1일 출범** 예정이며, **피해구제심의위원회**도 조속히 구성할 계획

□ 한편,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 중임

○ **피해 현황 분석, 피해 구제 지원 기준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포항 주민 의견 수렴**과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협의를 거쳐 **8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임

□ 산업부는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포항지진 진상조사와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 추진 체계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향후 각 위원회의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 강조함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TF 조동후 사무관(☎ 044-203-589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포항지진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주요내용**

법률	시행령	시행일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 포항지진 진상규명을 위해 총리소속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 (구성) 위원 9명(위원장 1명 포함), 총리 임명 ▸ (업무) ①포항지진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②지열발전사업 추진과정 적정성 조사, ③포항지진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 개선 및 대책 수립 ▸ (활동기간) 1년, 한 차례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 (시행령 위임)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상임위원 1명 배치 ▸ (자격요건) △법조계), △교수(지질·지반·재해·재난관리·행정·법 등) △지질·지반·재해·재난 분야 전문가 △국가R&D 전문가 ▸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척·기피·회피, 의결 정족수, 회의의 공개 등 규정	4.1일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 포항지진 피해자 구제 및 지원을 위해 총리소속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 위원 9명(위원장 1명 포함), 총리 임명 ▸ (업무) ①피해자 해당여부 심의·의결, ②피해자·포항시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추진·점검, ③피해조사, 피해구제 지원금·지원대상·범위 결정 등 ☞ (시행령 위임)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자격요건) △법조계, △교수(행정·법·피해구제 등) △재난피해구제 전문가 △지진건강피해 관련 전문의 등 △관계부처(국조·기재·행안·산업부) 고위공무원 ▸ 위원 임기는 2년 ▸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척·기피·회피, 의결 정족수, 회의의 공개 등 규정	4.1일
피해자 인정 및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 (피해구제 지원금)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지급 ▸ (피해자 인정) 법 시행(공포 후 8개월) 후 1년 이내에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정(한 차례 30일이내 연장 가능) ☞ (시행령 위임) 지원금 지원대상, 피해범위 산정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피해자 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 등	**※ 개정 추진 예정(~8월)**	9.1일
포항주민 지원사업 ▸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국가등은 피해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시행 ▸ (포항트라우마센터) 국가는 피해자의 종합적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포항트라우마센터 설치 가능 ▸ (재난예방교육사업 등) 국가등은 포항지진 관련 자료 수집·보존, 재난 예방교육 등을 위한 사업 시행 가능 ☞ (시행령 위임)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지원 내용·기간,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재난예방교육사업 종류 등	▸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공동체 회복 관련 교육·상담 등 지원, 지원기간 3년(피해구제심의위 의결로 연장가능) ▸ (포항트라우마센터) 개인상담 및 집단프로그램 개발·운영, 피해자 심리증상 및 정신질환검사 등 수행 ▸ (재난예방교육사업 등) 사업종류는 지진대비 훈련 및 안전교육시설 설치·운영, 포항지진 자료 수집·보관 등	4.1일
사무국 ▸ 두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 설치 ▸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두며, 관계기관 등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파견 요청 가능 ☞ (시행령 위임) 사무국 업무·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	▸ 명칭은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 ▸ 단장은 고공단 나등급으로 보하고, 직원은 관계기관·법인·단체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구성	4.1일